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관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후과학국과 지방기상청의 사무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기능과 용어로 정비하며, 강우레이더의 운영·관리를 수행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에 제주공항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기상관측장비 운영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직공무원제도 실효성 증대를 위해 본부 3급 또는 4급 1개 직위에 수석전문관 보임이 가능하도록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청 정원 4명(6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4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문기상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후정책과·기후예측과·해양기상기후과·기후변화감시과·수문기상팀”을 “기후정책과·기후예측과·해양기상기후과·기후변화감시과”로, “보하며, 수문기상팀장 및”을 “보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기후변화(감시·분석·예측 등)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조정
5. 기후 관련 회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7. 기후예측 평가에 관한 사항

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운영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감독
 9.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10.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구축에 관한 사항
 11. 홍수 등 기상재해 대응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水文氣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2. 수문기상의 감시·예측·분석
 13. 수문기상 관련 기술의 개발·검증 및 보급
 14. 수문기상 관련 시스템 개발·운영
 15. 수문기상 관련 국내외 협력
 16. 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7. 가뭄의 감시·예측·분석
 18. 가뭄 관련 기술의 개발·검증 및 보급
 19. 가뭄 관련 시스템 개발·운영
 20. 가뭄 관련 국내외 협력
 21. 기상 조절 관련 기본정책 수립 및 실험 지원에 관한 사항
 22. 기상 조절에 관한 대내외 협력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8조제4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를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관련 기술개발·개선·보급

5. 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 생산·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리

제8조제4항제9호 중 “장기예측자료”를 “기후예측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장기예보”를 “기후예측”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3 중 “기후예측관련”을 “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4. 해양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통보

제11조제7항제7호 중 “장기예보”를 “기후예측 정보”로, “기상지식”을 “기상·기후 관련 지식”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중 “장기예보”를 “기후예측 정보”로, “기상지식”을 “기상·기후 관련 지식”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제5호 중 “관악산·구덕산·오성산·면봉산·광덕산·강릉·백령도·진도·성산·고산기상레이더의”를 “대형레이더”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소형레이더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8”을 “7”로 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를 신설한다.

별표 4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8”을 “7”로 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5”를 “89”로,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4”를 “120”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8”을 각각 “19”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를 “5”로 한다.

별표 5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9”를 각각 “20”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를 “5”로 한다.

별표 8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4”를 각각 “62”로,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을 “11”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6”을 “23”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를 “7”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3”으로, 기상연구사 “5”를 “6”으로 한다.

별표 8의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4”를 각각 “62”로,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를 “14”로, 행

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4”를 “21”로,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을 “6”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3”으로, 기상연구사 “5”를 “6”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1”을 각각 “112”로, 3급 또는 4급 이하 “109”를 “110”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8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환경부령 제94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수치모델개발과장”을 “수치예보기획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4명(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치모델링센터장”을 각각 “수치예보센터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후과학국) ① (생 락)	제8조(기후과학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기후과학국에 <u>기후정책과 · 기후예측과 · 해양기상기후과 · 기후변화감시과 · 수문기상팀</u> 및 기후위기협력팀을 두되, 기 후정책과장 · 해양기상기후과장 · 기후변화감시과장은 부이사 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 관으로 보하고, 기후예측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 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u>보하</u> <u>며</u> , 수문기상팀장 및 기후위기 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기상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 관으로 보한다.	② ----- <u>기후정책과 · 기후예측과 · 해양기상기후과 · 기후변화감시과</u> ----- ----- ----- ----- ----- ----- ----- <u>보하</u> <u>며</u> , ----- ----- ----- ----- ----- -----.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 측 등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 획의 수립 · 종합 · 조정	1.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 측 등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 획의 수립 · 종합 · 조정
1의2. 「기후 · 기후변화 감시	2.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u>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u> <u>에 관한 사항</u> 2. <u>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u> <u>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u> <u>사항</u> 3. <u>기후·기후변화(감시·분석</u> <u>·예측 등) 분야 연구개발 사</u> <u>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u> <u>협의·조정</u> 4. <u>기후 관련 회의체 운영에 관</u> <u>한 사항</u> 5. <u>삭 제</u> 6. <u>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u> <u>의체(IPCC: Intergovernmenta</u> <u>l Panel on Climate Change)</u> <u>에 관한 사항</u> 7. <u>장기예보 평가에 관한 사항</u> 8.·9. <u>삭 제</u> 9의2. <u>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u> <u>체 기후센터(APCC: APEC Cl</u> <u>imate Center)의 운영 및 연구</u> <u>개발사업에 관한 지도·감독</u> 9의3. <u>유엔기후변화협약(UNFC</u> <u>CC: United Nations Framew</u> <u>ork Convection on Climate C</u> <u>hange)에 관한 사항</u>	<u>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개</u> <u>정에 관한 사항</u> 3. <u>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u> <u>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u> <u>사항</u> 4. <u>기후·기후변화(감시·분석</u> <u>·예측 등) 분야 연구개발 사</u> <u>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u> <u>협의·조정</u> 5. <u>기후 관련 회의체 운영에 관</u> <u>한 사항</u> 6. <u>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u> <u>의체(IPCC: Intergovernmenta</u> <u>l Panel on Climate Change)</u> <u>에 관한 사항</u> 7. <u>기후예측 평가에 관한 사항</u> 8. <u>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u> <u>기후센터(APCC: APEC Clim</u> <u>ate Center)의 운영 및 연구개</u> <u>발사업에 관한 지도·감독</u> 9. <u>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 <u>United Nations Framework</u> <u>Convection on Climate Chan</u> <u>ge)에 관한 사항</u> 10. <u>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u> <u>S: Global Framework for Cli</u>
---	--

9의4.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구축에 관한 사항

9의5. 삭 제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 ~ 22. 삭 제

mate Services) 구축에 관한 사항

11. 홍수 등 기상재해 대응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水文氣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2. 수문기상의 감시·예측·분석

13. 수문기상 관련 기술의 개발·검증 및 보급

14. 수문기상 관련 시스템 개발·운영

15. 수문기상 관련 국내외 협력

16. 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7. 가뭄의 감시·예측·분석

18. 가뭄 관련 기술의 개발·검증 및 보급

19. 가뭄 관련 시스템 개발·운영

20. 가뭄 관련 국내외 협력

21. 기상 조절 관련 기본정책 수립 및 실험 지원에 관한 사항

22. 기상 조절에 관한 대내외 협력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1의2. 이상기후 예측정보의 생산</u>	<u><삭 제></u>
<u>1의3. 이상기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u>	<u><삭 제></u>
<u>1의4. 이상기후 관련 기술 개발</u> · 개선 · 보급	<u><삭 제></u>
2. 기후예측 <u>정보</u> 의 생산 · 관리 · 통보 및 검증	2. ----- <u>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u> -----
3. 기후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	3. 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관련 <u>기술개발 · 개선 · 보급</u>
4. 삭 제	
5. 기후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전망 <u>정보 생산 · 제공 시스템의 구축 · 운영 · 관리</u>
6. ~ 8. 삭 제	
9.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u>장기예측자료</u> 생산센터 운영	9. ----- <u>기후예측자료</u> -----
9의2. 세계기상기구 <u>장기예보</u>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9의2. ----- <u>기후예측</u> ----- --
9의3. <u>기후예측관련</u>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9의3. <u>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관련</u> -----
⑤ 해양기상기후과장은 다음 사	⑤ -----

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신설>

5.·6. 삭제

7. ~ 15. (생략)

⑥ (생략)

⑦ 수문기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가뭄
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수문기상 및 가뭄 감시·예
측·분석

3. 수문기상 및 가뭄 관련 기술
의 개발·검증 및 보급

4. 수문기상 및 가뭄 대응 시스
템 운영

5. 수문기상 및 가뭄 관련 국내
외 협력

6.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인
공강우 기본정책 수립

7. 수문기상, 가뭄 관련 인공강
우 실험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공강우에 관한 자문단 운
영 등 대내 협력

9. 인공강우 관련 유관기관 협

-----.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통보

7. ~ 1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삭제>

업 등 대외 협력

⑧ (생 략)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⑥ (생 략)

⑦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기후정보(장기예보를 포함한 다)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8. 삭 제

9. ~ 15. (생 략)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 ③ (생 략)

④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기후정보(장기예보를 포함한 다)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7. ~ 12. (생 략)

⑤·⑥ (생 략)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 ③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6. (현행과 같음)

7. -----기후예측 정보-----
----- 기상·기후 관련 지식-----

9. ~ 15.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6. -----기후예측 정보-----
----- 기상·기후 관련 지식-----

7. ~ 12.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레이더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관악산·구덕산·오성산·면봉산·광덕산·강릉·백령도·진도·성산·고산기상레이더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6. ~ 8. (생략)

⑤ (생략)

환경부령 제8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된 수문기상팀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수문기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대형레이더 -----

5의2. 소형레이더 운영에 관한
사항

6. ~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8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삭제>

<삭제>

<u>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수문기상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정 책과장이 분장한다.</u> 환경부령 제940호 기상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수치예보활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수 치예보활용팀장이 분장하는 사 항은 <u>수치모델개발과장이 분장</u> 한다.	환경부령 제940호 기상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 ----- ----- ---- <u>수치예보기획과장</u>----- ----.
---	--

신 · 구정원대비표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	· · <u>8</u>	· · <u>7</u>	-1
<u>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 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 관</u>	<u><신 설></u>	<u>1</u>	+1
· ·	· ·	·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8</u>	<u>7</u>	-1
<u>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 통신사무관	<u>85</u>	<u>89</u>	+4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 주사·시설주사·전산주 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24</u>	<u>120</u>	-4
·	·	·	
·	·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8</u>	<u>19</u>	+1
일반직 계	<u>18</u>	<u>19</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	<u>4</u>	<u>5</u>	+1
·	·	·	
·	·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3]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u>	<u>20</u>	+1
일반직 계	<u>19</u>	<u>20</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기상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	<u>4</u>	<u>5</u>	+1
·	·	·	
·	·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3]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4</u>	<u>62</u>	+18
일반직 계	<u>44</u>	<u>62</u>	+18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 주사·시설주사·전산주 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6</u>	<u>11</u>	+5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	<u>16</u>	<u>23</u>	+7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 서기·시설서기·전산서 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4</u>	<u>7</u>	+3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 통신서기보	<u>1</u>	<u>3</u>	+2
·	·	·	
기상연구사	<u>5</u>	<u>6</u>	+1
·	·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4]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4</u>	<u>62</u>	+18
일반직 계	<u>44</u>	<u>62</u>	+18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 주사·시설주사·전산주 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9</u>	<u>14</u>	+5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	<u>14</u>	<u>21</u>	+7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 서기·시설서기·전산서 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3</u>	<u>6</u>	+3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 통신서기보	<u>1</u>	<u>3</u>	+2
·	·	·	
기상연구사	<u>5</u>	<u>6</u>	+1
·	·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11</u>	<u>112</u>	+1
일반직 계	<u>111</u>	<u>112</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9</u>	<u>110</u>	+1
·	·	·	